

제310회 임시회

2012.5.18.(금)

심 사 보 고 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5. 18. (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종필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2년 5월 1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2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5월 10일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규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충북테크노파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기본재산의 조성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조례안을 체계화함으로써 조례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테크노파크의 주요사업 명시(안 제3조)
- 기본재산의 조성(안 제4조)
- 테크노파크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 및 검사(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송장섭)

-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테크노파크의 주요사업과 기본재산을 명시하는 등 관련 조례안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항과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2.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단지를 말한다.
3. “기술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지역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도내 시·군

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① 충북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
2. 지역전략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평가
3. 산업기술단지 조성 관련 사업
4.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리
5. 지역기업지원 사업
6.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7.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위임·위탁사업
8. 지역특화사업 운영
9. 수탁 연구용역사업
10. 그 밖에 테크노파크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지원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의 차입금 및 수익금

제5조(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테크노파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나 검사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와 테크노파크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 상황 등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된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역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군과 제7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둘 이상의 시·군을 말한다.
3. "광역경제권"이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초광역개발권"이란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 및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 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4. "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